

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소방훈련·교육 안내

I 관련근거

-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~제39조, 제52조
- 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 제33005호)

II 소방대상물 소방훈련·교육 규정

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기 소방훈련·교육

구분	대상물	실시주체	실시내용	실시횟수	실시결과 보관	실시결과 제출
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			▶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·교육 의무 없음 ▶ 본부장·서장이 소방안전교육 실시 가능(재량)			
소방안전관리대상물	특급	관계인	▶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·교육 (의무)*	▶ 연 1회 이상 (본부장·서장이 2회 범위내 추가 실시 요청 가능) ※ 특급·1급은 합동훈련 가능(관서장 재량)	▶ 2년간 자체보관 (규칙 별지 제28호 서식)	▶ 30일 이내 소방관서에 제출 (규칙 별지 제29호 서식)
	1급					▶ 제출 없음
	2급					
	3급					

* 정기훈련을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3백만원이하 처분, 실시결과를 미제출할 경우(특급, 1급에 한함) 과태료 2백만원이하 처분

2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불시 소방훈련·교육

구분	대상물	실시주체	실시내용	실시횟수	사전통지	평가결과 관리
소방안전관리대상물	▶ 의료시설 ▶ 교육연구시설 ▶ 노유자시설 ▶ 기타 관서장 인정대상	본부장 소방서장	소방훈련·교육 (재량)	▶ 규정없음	▶ 실시하고자 할 경우, 실시 10일전까지 관계인에게 통지(규칙 별지 제30호 서식)	▶ 평가 가능(재량) ▶ 훈련 등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관계인에게 통지 (규칙 별지 제31호 서식)

3 공공기관

구분	실시주체	실시내용	실시횟수	실시결과 보관	실시결과 제출	과태료 규정
공공기관	기관장	소방훈련·교육 (의무)	▶ 연 2회 이상(1회 이상은 합동훈련 의무이나 예외 있음)	▶ 2년간 자체보관	▶ 제출 없음	▶ 미 실시: 규정 없음

* 상시근무인원이 10인 이하이거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대상 기관은 합동훈련을 안할 수 있음